38 자동차 도장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1 개 요

근로자 ○○○은 1990년 6월(23세)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트럭 차체부 상도반에서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4월부터는 도장부 상도반에서 라인 관리 및로봇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상 조기위암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부분위절제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90년 6월에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교육을 마치고 트럭제조부 상도반에 배치되어 약 16년 동안 직접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고 도장하기 전 전착 도료에 의해 도장된 차체를 연마하는 작업과 연마된 표면에 남아있는 분진을 압축공기로 불어내는 작업 또한 수행하였다. 2006년 4월부터는 도장공정이 자동화 되어 도장하는 로봇을 관리하고 도장 상도라인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다.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성 유해인자에는 노출가능성이 낮았다. 과거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 시와 연마 작업 시 페인트에 함유된 무기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문헌과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통해 검토해 보았을 때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 중금속 납)

5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4월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위내시경상 위궤양, 만성 표층성 위염(조직검사 상 만성위염) 진단 받았으나 증상 없어 치료 및 추후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012년 5월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상 조기위암(Early gastric cancer, type Ⅱc) 진단받고 2012년 6월 위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90년에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2006년 3월까지 약 16년간 트럭차제부 상도반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4월부터는 도장부 상도반에서 라인 관리 및 로봇 운용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제한적으로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있다. 비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H.pylori, 흡연이 있다.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성 유해인자에는 노출가능성이 낮았고, 무기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문헌과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통해 검토해 보았을 때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의무기록에서 H.pylori양성소견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